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운영회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
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621호, 2021. 12. 21. 일부개정,
2022. 12. 22. 시행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△ ‘응급의료기관’의 정의에서
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, △ 지역응급의료 현황 및 지역응급
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‘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’ 수립 시 포함하여야

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
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